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90
----------	-------

발의연월일 : 2025. 8. 26.

발 의 자 : 김성원 · 김종양 · 김용태
최형두 · 박충권 · 이인선
배현진 · 박정하 · 김상훈
정동만 · 박성훈 · 조정식
김태호 · 정희용 · 조인철
이기현 · 박성민 · 김교홍
강승규 · 김형동 · 김원이
의원(21인)

제안이유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전 세계 73개국 153개 지회에 약 7,000명의 재외동포 경제인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해외 경제 네트워크로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교류를 지원하고 재외동포 무역인 및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 6단체’가 국내 다양한 유형의 기업과 경제인을 대표하며 활발히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지원 부족과 해외

활동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주요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전문 인력 확보에도 제약이 있어 재외동포 경제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국내 경제 7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네트워크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설립하여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연구·분석과 세계한인경제인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영토 확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연구, 세계한인경제인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세계한인경제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임원, 총회 및 이사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함(안 제20조).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설립하여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연구·분석과 세계한인경제인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영토 확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세계한인경제인”이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주된 근무지가 해외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및 설립) ①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등의 설치) 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회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세계한인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3. 세계한인경제인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및 협력
4. 신문·방송·잡지 등을 활용한 세계한인경제인 관련 홍보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건의·자문) 협회는 해외경제 동향 분석, 해외경제인 대상 여론 수렴 등을 토대로 세계한인경제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30명 이내의 부회장과 이사장·부이사장·이사·감사·위원장을 둔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30명 이내의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부회장 중 1명을 수석 부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 부회장이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⑦ 그 밖에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장·부이사장 및 특별위원
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회의방식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가능하며,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
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이사회) ①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

다.

③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국) ①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협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6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연도) 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협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 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 예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

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서 제출) 협회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이 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

한인경제무역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는 설립등기일에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